「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9호)

ㅇ 2026. 10. 14.

ㅇ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9. 23. 서초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6. 9. 28.

다. 상 정 일 자 : 2026.10.14.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1회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행정국장 직무대리)

○ 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 현행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성훈)

1.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동주민센터의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의 현행화를 통해 주민의 혼

선을 없애고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1](사무소의 소재지)

3. 주요 개정조례안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초구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명칭의 현행화를 통해 주민의 혼선을 없애고자 현행 조례 “〔별표〕 동주민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것으로,

- 서초3동주민센터의 경우, 당초 “반포대로34, 2층(서초동 1459-12)”에서 2026. 9. 14. “반포대로28길 7(서초동 1542-11)”로 이전하였고,

[서초3동 열린문화센터 현황]

○ 사업기간 : 2020. 1. ~ 2026. 9.
○ 규 모 : 연면적 6,953.5㎡ (지하5층 ~ 지상11층)
○ 주요시설 : 서초3동주민센터(자치회관), 서초평생학습관, 서초시니어라운지, 서초·교대역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서초문화재단 축제사무국 등

- 반포본동주민센터의 경우, 당초 “신반포로3길 8(반포프라자종합상가)”에 위치하였으나, 반포래미안트리니원아파트[2](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재건축 완공되어 2026. 8. 10일자로 임시청사(신반포로 20, 117동 1층)로 이전하여 위치 현행화가 필요함.

※ 반포본동주민센터의 현 청사는 임시청사로, 향후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1) 제9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17개동 2,091세대

아파트[3](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완공 시점에 신청사로 이전할 예정임.

- 관할구역 표기 개정과 관련하여,

· 반포2동주민센터의 경우, “반포주공1단지”가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라는 명칭으로 재건축 공사 중에 있고,

· 반포3동주민센터의 경우, “신반포9차”가 “메이플자이[4]”라는 명칭으로 2026. 6월 완공된 바, 각각 표기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4. 종합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별표〕의 개정을 통해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반포2동 주민센터 관할구역의 재건축 아파트 명칭을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디에이치 반포124”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례안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답〉 당초 조례안 제출 당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2026년 10월 9일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에서 “디에이치 반포124”가 최종 선정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할구역 명칭을 실제 의결된 아파트 명칭으로 수정할 필요

3) 55개동 5,002세대

4) 29개동 3,307세대

가 있다고 판단됨.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동의안 발의(발의자 : 김형우 위원)〗

○ 안 별표 반포2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재건축아파트명을 현행화한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를 “디에이치 반포124”로 수정하고자 하며,

○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6. 수정안의 요지 : 붙임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9

제안일자 : 2026.10.14.
제 안 자 : 행정복지위원회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

2. 수정주요내용

○ 안 별표 반포2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재건축아파트명을 현행화한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를 “디에이치 반포124”로 수정하고자 하며,

○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3. 수 정 안 : 붙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한다.

○ 안 별표 반포2동주민센터 관할구역 재건축아파트명을 현행화한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를 “디에이치 반포124”로 수정하고자 하며,

○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반포동 중 · 반포주공1단지→반포중학교→세화여중,고→방배동 801번지 동쪽↔반포대로 서쪽지역	반포동 중 ·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	반포동 중 · 디에이치 반포124→ ----------